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28”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427”을 “4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15”를 “41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77”을 “687”로 하고, 일반직 계 “677”을 “6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1”을 “671”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428</u>	<u>429</u>	+1
•	•	•	
•	•	•	
일반직 계	<u>427</u>	<u>42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15</u>	<u>416</u>	+1
•	•	•	
•	•	•	

[별표 3]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7</u>	<u>687</u>	+10
일반직 계	<u>677</u>	<u>687</u>	+1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1</u>	<u>671</u>	+1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0